

의안번호	제2805호
의결 연월일	2024. 7. 25. (제295회)

의결사항	원안가결
------	------

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4. 7. 1.

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05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7. 1.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증진을 위해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존속기간 변경(안 제26조)

- 존속기간: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(4년간)

→2021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(9년간)

※ 사업기간 연혁

구분	제정 (2020. 10. 12.)	개정 (2022. 10. 14.)	개정안 (2024. 5.)	비고
사업기간	2년간 (2021. 1. 1. ~ 2022. 12. 31.)	4년간 (2021. 1. 1. ~ 2024. 12. 31.)	9년간 (2021. 1. 1. ~ 2029. 12. 31.)	

나. 별지 제1호서식(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서) 중 인용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청소년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2024년 기확보 시행(2025년 당초예산 확보 예정)

다. 협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22208(2024. 6. 3.)호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935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5. 22.~2024. 6. 12.(21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6조 중 “2024년 12월 31일 까지(4년간)”를 “2029년 12월 31일까지
(9년간)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존속기간) 본 조례는 2021 년 1월 1일부터 <u>2024년 12월 31</u> <u>일 까지(4년간)</u> 으로 한다.	제26조(존속기간) ----- ----- <u>2029년 12월 31</u> <u>일까지(9년간)</u> -----.

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서(꿈키움 카드 발급신청)

성명		주민등록번호	
주소		연락처	자택: 휴대전화:
바우처 사용 선택 (2개 동시신청 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 꿈키움 카드 <input type="checkbox"/> 쿼알코드		
통지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서면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우편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문자 메시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
본인(대리인 신청)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, 「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신청인) 성명 (서명 또는 인)

고성군수 귀하

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공 동의서

본인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목	수집 및 이용목적	보유기간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	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(청소년 꿈키움 카드 신청)	사후관리 종료 시까지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예 아니오

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제공받는 기관	제공목적	제공하는 항목	보유기간
「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」 제22조에 따른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	꿈키움 카드 제작 및 관리	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	사후관리 종료 시까지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예 아니오

본 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법정대리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청소년 및 보호자, 가구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의 사항

1.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시 「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」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.
2.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서(꿈키움 카드 발급신청)

성명		주민등록번호	
주소		연락처	주택: 휴대전화:
바우처 사용 선택 (2개 동시신청 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 꿈키움 카드 <input type="checkbox"/> 큐알코드		
통지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서면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우편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문자 메시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

본인(대리인 신청)은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, 「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신청인) 성명 (서명 또는 인)

고성군수 귀하

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공 동의서

본인은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.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.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

항 목	수집 및 이용목적	보유기간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주소,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	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(청소년 꿈키움 카드 신청)	사후관리 종료 시까지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예 아니오

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제공받는 기관	제공목적	제공하는 항목	보유기간
「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」 제24조에 따른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	꿈키움 카드 제작 및 관리	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등	사후관리 종료 시까지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예 아니오

본 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법정대리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청소년 및 보호자, 가구원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개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의 사항

1.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시 「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」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.
2.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 및 꿈키움 카드 발급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
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약

- 가. 관련 조문: 「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」 제3조 및 제10조
- 나. 비용 발생 요인: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업비
- 13세~15세: 월 5만 원, 16세~18세: 월 7만 원

2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1) 사업대상: 고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3세~18세 청소년
- 2) 사업규모: 2,529명(2024년 기준)

(2024. 4. 고성군 인구통계 기준, 단위: 명)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사업대상자 수	2,505	2,411	2,225	2,119	2,025	11,285

* 사업대상자 수 연평균 증감률: -5%

나. 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 원)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세출						
- 균비	1,717,000	1,631,150	1,545,300	1,459,450	1,373,600	7,726,500

* 사업예산 연평균 증감률: -5%

다. 재원조달방안: 2025년~2029년 일반회계로 편성

(단위: 천 원)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합계
재원 조달	의존재원	-	-	-	-	-
	자체재원	1,717,000	1,631,150	1,545,300	1,459,450	1,373,600
	기 타	-	-	-	-	-
	소 계	1,717,000	1,631,150	1,545,300	1,459,450	1,373,600

작성자: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

<청소년 기본법>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제49조(청소년복지의 향상)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·태도·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,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, 직업재활훈련,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·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 3. 24.]